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560 호 2026. 5. 7.(목)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97호[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26-2)].....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98호[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공지 6개소)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99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26-10)]..... 4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639호[도시계획시설(도로 중2·571호선 외 5개 노선 및 소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641호[소하천 점용(변경)허가 공고(26-2)]..... 1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642호[소하천 점용·사용허가 공고(26-3)]..... 1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646호[2026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시행 공고]..... 1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649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652호[공유재산 내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35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li> <li>☞ 북구 홈페이지(<a href="http://www.bukgu.ulsan.kr">www.bukgu.ulsan.kr</a>)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li> </ul>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6 - 97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변경)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6. 5. 7.
2. 점용·사용의 목적 : 제1,2종근린생활시설(목욕장, 일반음식점) 건립에 따른 진입로 및 배수관 매설
3. 점용·사용의 장소 : 무룡동 346-2번지 외 2필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당초 : (계속) 41m<sup>2</sup>, (일시) 14m<sup>2</sup>
    - 변경 : (계속) 43.1m<sup>2</sup>, (일시) 13.5m<sup>2</sup>
  - 나. 기 간 :
    - 당초 : (계속) 2026. 1. 29. ~ 2027. 12. 31. (일시) 2026. 1. 29. ~ 2026. 4. 26.
    - 변경 : (계속) 2026. 5. 7. ~ 2027. 12. 31. (일시) 2026. 5. 7. ~ 2026. 8. 6.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동현환경(주) 대표 박지현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진장24길 3, 304호(진장동)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98호

#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공지 6개소)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산175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과 북구 매곡동 산174-1번지 외 5개소 도시관리계획(공공공지)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7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사유서

#### 가.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79	천마산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북구 달천동 산175번지 일원	-	증)25,818	25,818	-	-

#### ■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79	천마산 어린이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공원 신설 - A=25,81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일원을 어린이공원으로 결정하여 어린이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li> </ul>

나. 도시관리계획(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62	공공공지	북구 매곡동 산174-1번지 일원	-	증)4,868	4,868	-	-
신설	163	공공공지	북구 구유동 산138-3번지 일원	-	증)1,193	1,193	-	-
신설	164	공공공지	북구 가대동 산82번지 일원	-	증)3,568	3,568	-	-
신설	165	공공공지	북구 염포동 산50-1번지 일원	-	증)9,752	9,752	-	-
신설	166	공공공지	북구 시례동 산155번지 일원	-	증)2,891	2,891	-	-
신설	167	공공공지	북구 대안동 산204번지 일원	-	증)4,774	4,774	-	-

■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62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A=4,868㎡	• 동대산 전망대 일원을 보행자의 통행과 일시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공공지로 결정하고자 함
163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A=1,193㎡	• 우가산 전망대 일원을 보행자의 통행과 일시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공공지로 결정하고자 함
164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A=3,568㎡	• 호암만디 전망대 일원을 보행자의 통행과 일시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공공지로 결정하고자 함
165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A=9,752㎡	• 동축산 염포전망대 일원을 보행자의 통행과 일시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공공지로 결정하고자 함
166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A=2,891㎡	• 상투봉 정상 일원을 보행자의 통행과 일시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공공지로 결정하고자 함
167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A=4,774㎡	• 파군산 정상석 일원을 보행자의 통행과 일시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공공지로 결정하고자 함

2. 관련도면 : 게재생략(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공원녹지과 비치)

※ 토지e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92) 및 북구 공원녹지과(☎052-241-7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6 - 99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가. 허가번호: 26-10

나. 허가 연월일: 2026. 5. 7.

#### 2. 점용·사용의 목적: 인공구조물의 설치(오수관(50mm)L=2m-PE수도관)

#### 3. 점용·사용의 장소: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762-8번지

####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일시 1.8m<sup>2</sup>, 영구 0.1m<sup>2</sup>

나. 기 간:

- 일시: 2026. 5. 7. ~ 2026. 5. 13.

- 계속: 2026. 5. 7. ~ 2040. 5. 31.

####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이강산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굴화4길20, 112동 201호(무거동, 굴화주공아파트)

#### 6.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신고대상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639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2-571호선 외 5개 노선 및 소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중2-571호선 외 5개 노선 및 소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7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사업

나. 명칭 : 북구 신천동 도시계획시설[도로(중2-571호선 외 5개노선) 및 소공원(141)]사업

###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6번지 일원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도로

등급	등 급		폭원(m)	연 장(m)	면 적(m <sup>2</sup> )	비 고
	류별	번호				
중로	2	571	16~20	260	4,333	
중로	3	442	5.0	18	94	
소로	1	139	10.5~14	310	3,517	
소로	2	91	8	273	2,195	
소로	2	648	8	91	731	
소로	2	656	8	12	120	

## 나. 소공원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고
141	소공원	북구 신천동 18번지 일원	1,386	

##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식회사 태정이앤씨 대표이사 정 우 열

나.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강북로 105, 3층 303호(성남동, 롯데캐슬 스카이)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20. 6. 29 ~ 2027. 0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불임참조**

## 7. 열람내용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내용

## 8. 열람기간 : 공보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

## 9.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052-241-7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1)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신천동	4-6	답	80.0	80.0	김찬오외 4인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202동 1403호(전하동, 전하이파크)				변경 없음
2	신천동	5-9	대	135.0	135.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3	신천동	5-10	대	136.0	136.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4	신천동	5-11	전	169.0	169.0	김찬오외 4인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202동 1403호(전하동, 전하이파크)				변경 없음
5	신천동	5-12	전	282.0	282.0	김찬오외 4인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202동 1403호(전하동, 전하이파크)				변경 없음
6	신천동	6-6	답	547.0	547.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7	신천동	6-7	전	189.0	189.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8	신천동	9-2	전	184.0	184.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9	신천동	10-6	전	154.0	154.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10	신천동	10-8	전	32.0	32.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11	신천동	11-5	전	158.0	158.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12	신천동	11-7	도	19.0	19.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13	신천동	12-10	대	148.0	148.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14	신천동	12-12	전	8.0	8.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15	신천동	12-13	전	159.0	159.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16	신천동	14-8	대	2.0	2.0	김좌수	울산시 남구 신정동 292-10				변경 없음
17	신천동	16-2	묘	15.0	15.0	최병곤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126블럭1롯데 평창리비에르1차 110동 102호				변경 없음
18	신천동	17-8	답	419.0	419.0	김윤수의 3인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159 (신정동)				변경 없음
19	신천동	17-9	답	566.0	566.0	김윤수의 3인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159 (신정동)				변경 없음
20	신천동	17-10	답	678.0	678.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21	신천동	18	대	236.0	236.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22	신천동	18-3	대	8.0	8.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23	신천동	18-4	대	54.0	54.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24	신천동	18-5	도	97.0	97.0	울산광역시 북구					변경 없음
25	신천동	18-6	도	10.0	10.0	울산광역시 북구					변경 없음
26	신천동	18-7	답	10.0	10.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27	신천동	18-8	답	86.0	86.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2)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28	신천동	19-2	답	227.0	227.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 없 경 음
29	신천동	23-2	묘	438.0	438.0	하현규	대구 서구 내당동 215-30				변 없 경 음
30	신천동	24-2	답	78.0	78.0	이강길	울산 중구 우정동 385 선경아파트 2동 803호				변 없 경 음
31	신천동	24-4	답	644.0	644.0	이강길	울산 중구 우정동 385 선경아파트 2동 803호				변 없 경 음
32	신천동	25-6	답	2.0	2.0	주식회사제이 와이에스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240, 한석빌딩 6층				변 없 경 음
33	신천동	25-7	답	65.0	65.0	정순태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43-2 현대하이페리온 2단지 201-1403				변 없 경 음
34	신천동	25-3	답	13.0	13.0	주식회사제이 와이에스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240, 한석빌딩 6층				변 없 경 음
35	신천동	26-8	과	1.0	1.0	정영동	울산광역시 중구 평동3길1, 108동 901호(유곡동,울산유곡푸르지 오)				변 없 경 음
36	신천동	26-9	과	1.0	1.0	정영동	울산광역시 중구 평동3길1, 108동 901호(유곡동,울산유곡푸르지 오)				변 없 경 음
37	신천동	27-1	과	270.0	270.0	김순영외 1인	울산 남구 옥동 586-8 서강필그림빌라 303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	변 없 경 음
38	신천동	27-7	과	93.0	93.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 없 경 음
39	신천동	27-8	도	59.0	59.0	울산광역시 북구					변 없 경 음
40	신천동	27-10	과	739.0	739.0	김순영외 1인	울산 남구 옥동 586-8 서강필그림빌라 303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	변 없 경 음
41	신천동	28-1	전	312.0	312.0	김재수	울산광역시 중구 운곡8길 80-4 (다운동)				변 없 경 음
42	신천동	29-5	답	1.0	1.0	정영동	울산광역시 중구 평동3길1, 108동 901호(유곡동,울산유곡푸르 지오)				변 없 경 음
43	신천동	58-19	전	238.0	238.0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카이트타워)				변 없 경 음
44	신천동	58-20	묘	157.0	157.0	박성숙외 4인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186-2 남운럭키맨션 104동 205호				변 없 경 음
45	신천동	58-21	묘	86.0	86.0	장호순외 1인	울산 북구 양정동 533-1 삼창에이스 808호				변 없 경 음
46	신천동	58-22	묘	82.0	82.0	장호순외 1인	울산 북구 양정동 533-1 삼창에이스 808호				변 없 경 음
47	신천동	262-7	전	21.0	21.0	김자야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17번길 6, 201동 702호 (달동, 삼성아파트)				변 없 경 음
48	신천동	262-8	전	28.0	28.0	정점선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로 55, 에이동 608호 (태화동, 동덕현대아파트)	가야농업협동 조합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가야시장로 53	근저당 권/지 상권	변 없 경 음
49	신천동	262-9	전	118.0	118.0	정점선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로 55, 에이동 608호 (태화동, 동덕현대아파트)	가야농업협동 조합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가야시장로 53	근저당 권/지 상권	변 없 경 음
50	신천동	262-11	과	1.0	1.0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카이트타워)				변 없 경 음
51	신천동	262-12	전	170.0	170.0	김자야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17번길 6, 201동 702호 (달동, 삼성아파트)				변 없 경 음
52	신천동	262-14	전	16.0	16.0	정점선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로 55, 에이동 608호 (태화동, 동덕현대아파트)				변 없 경 음
53	신천동	263-1	전	1.0	1.0	주식회사제이 와이에스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240, 한석빌딩 6층				변 없 경 음

###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3)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54	신천동	264-1	전	201.0	201.0	김금규	울산 동구 서부동 238-29 현대패밀리명덕아파트 103동 803호				변 없 경 음
55	신천동	265-2	묘	448.0	448.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 없 경 음
56	신천동	265-3	묘	37.0	37.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 없 경 음
57	신천동	267-5	임	101.0	101.0	장호순외 1인	울산 북구 양정동 533-1 삼창에이스 808호				변 없 경 음
58	신천동	279-24	도	63.0	63.0	울산광역시 북구					변 없 경 음
59	신천동	279-25	답	128.0	128.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 없 경 음
60	신천동	279-26	답	89.0	89.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 없 경 음
61	신천동	279-27	답	49.0	49.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 없 경 음
62	신천동	279-28	답	40.0	40.0	이필선	울산광역시 남구 팔등로27번길 8 (신정동)				변 없 경 음
63	신천동	279-29	도	16.0	16.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 없 경 음
64	신천동	279-30	답	98.0	98.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 없 경 음
65	신천동	281-2	답	237.0	237.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 없 경 음
66	신천동	283-4	답	343.0	343.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 없 경 음
67	신천동	285-8	전	126.0	126.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 없 경 음
68	신천동	288-8	대	135.0	135.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 없 경 음
69	신천동	288-10	대	10.0	10.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 없 경 음
70	신천동	288-11	대	51.0	51.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 없 경 음
71	신천동	288-12	대	42.0	42.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 없 경 음
72	신천동	288-13	대	142.0	142.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 없 경 음
73	신천동	288-15	대	1.0	1.0	박송정의 3인	울주군 농소면 호계리 453				변 없 경 음
74	신천동	288-16	대	19.0	19.0	박송정의 3인	울주군 농소면 호계리 453				변 없 경 음
75	신천동	288-17	대	52.0	52.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 없 경 음
76	신천동	288-18	대	100.0	100.0	김정순외 1인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117-3 미성연립 105호				변 없 경 음
77	신천동	289-7	대	10.0	10.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 없 경 음
78	신천동	289-13	도	25.0	25.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외 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 없 경 음
79	신천동	289-14	전	306.0	306.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 없 경 음
80	신천동	291-8	전	380.0	380.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 없 경 음

###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4)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81	신천동	291-10	전	90.0	90.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82	신천동	300-11	대	14.0	14.0	안순필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00				변경 없음
83	신천동	301-2	전	244.0	244.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84	신천동	302-6	전	57.0	57.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85	신천동	302-7	전	94.0	94.0	이필선	울산광역시 남구 팔등로27번길 8 (신정동)				변경 없음
86	신천동	302-8	전	81.0	81.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87	신천동	748-2	구	23.0	23.0	농림축산 식품부					변경 없음
88	신천동	749-10	잡	38.0	38.0	기획재정부					변경 없음
89	신천동	749-6	잡	1.0	1.0	기획재정부					변경 없음
90	신천동	749-12	잡	38.0	38.0	기획재정부					변경 없음
91	신천동	749-14	잡	5.0	5.0	기획재정부					변경 없음
합 계				12,376.0	12,376.0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6 - 641호

## 소하천점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신**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
소하천명		진득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당초: 달천동 892-25번지, 달천동 463번지 변경: 달천동 892-25번지
	면적	당초: 일시: 116㎡/ 영구: 49㎡ 변경: 일시: 112㎡/ 영구: 40㎡
	기간	당초: 일시: 2025. 9. 11. ~ 2026. 8. 31.(설계서 상의 공사기간) 변경: 일시: 2025. 9. 11. ~ 2027. 4. 30.(설계서 상의 공사기간)
	목적 및 사유	암거 확장 등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 소하천점용 허가 공고

공고 제2026-641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신**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
소하천명		진득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당초: 달천동 892-25번지, 달천동 463번지 변경: 달천동 892-25번지
	면적	당초: 일시: 116㎡/ 영구: 49㎡ 변경: 일시: 112㎡/ 영구: 40㎡
	기간	당초: 일시: 2025. 9. 11. ~ 2026. 8. 31.(설계서 상의 공사기간) 변경: 일시: 2025. 9. 11. ~ 2027. 4. 30.(설계서 상의 공사기간)
	목적 및 사유	암거 확장 등

열람서류

1. 설계도서
2. 위치도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6 - 642호

## 소하천점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두산건설(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소하천명		차일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창평동 882-6번지
	면적	일시: 8.0㎡
		계속: 2.5㎡
	기간	일시: 2026. 5. 1. ~ 2027. 4. 30.
계속: 2026. 5. 1. ~ 2031. 4. 30.		
목적 및 사유		관로 매설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 소하천점용 허가 공고

공고 제2026-642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두산건설(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소하천명		차일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창평동 882-6번지
	면적	일시: 8.0㎡ 계속: 2.5㎡
	기간	일시: 2026. 5. 1. ~ 2027. 4. 30. 계속: 2026. 5. 1. ~ 2031. 4. 30.
	목적 및 사유	관로 매설

열람서류

1. 설계도서
2. 위치도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6 - 646호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시행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7조2에 따라 2026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시행근거 및 목적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
- 나.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주민에게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 지원

### 1. 지원대상

-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1973. 6. 27.이전 거주자, 주민등록전산상)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
- 나.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전년도(24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6,474,708원)이하인 세대

### 3. 지원 제외대상

최근 3년간 세대주(세대원)이 3회 이상 GB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5. 7. ~ 6. 4.

나. 접수처 : 본인 방문접수(북구청 도시과)

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1부
- 소득·재산신고서 1부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지정당시거주 해당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 기타 신청인이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 5. 기타 참고사항

가.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생활비용 보조사업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 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서류제출 당사자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241-79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안내문

1. 국토교통부와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보전부담금을 활용하여 국가가 70%~9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0~30%의 지방비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소득증대사업 지원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보조

3. 생활비용보조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1973. 6. 27.) 거주 가구 중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전년도('24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6,474,708원) 이하인 세대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지정당시거주자“라 한다)

다.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척함.

4. 위의 생활비용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세대주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2026. 6. 4.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비 서 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부 4. 통장사본 1부, 신분증 5. 기타 신청인이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등
------------------	---

5. 생활비용이 보조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당시 거주 저소득 주민을 지원

하기 위해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 신청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기타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생활비용보조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당사자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도시과(☎ 241-79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7. 사업집행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기간 : 2026. 5. 7. ~ 6. 4.
-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 2026. 9. ~ 12.



(4쪽 중 2쪽)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차 <sup>9)</sup> <input type="checkbox"/> 기타 <sup>10)</sup>	
	기초생활보장 (바우처 제공)	※ 유의사항 -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사회서비스 이용권)로 제공됩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보장결정된 이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을 방문하여 바우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input type="checkbox"/> 부모급여(현금) (대상자 이름 : _____)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_____), ( <input type="checkbox"/> 가정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_____), <input type="checkbox"/>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_____)	
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아동 · 청소년	초 · 중 · 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인터넷통신사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SK브로드밴드 <input type="checkbox"/> LG U+ <input type="checkbox"/> SK 텔레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_____, 주민번호 : _____]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input type="checkbox"/> 청소년특별지원 ( <input type="checkbox"/> 연장신청)
노인	<input type="checkbox"/> 기초연금(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동시신청)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동시신청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부가급여)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 <input type="checkbox"/> 장애아가족양육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input type="checkbox"/> 한부모 가족지원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 타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확인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자활급여 <input type="checkbox"/> 시설이용·입소 <input type="checkbox"/> 자산형성 <input type="checkbox"/> 타법 의료급여 <sup>11)</sup> ( )	
	<input type="checkbox"/>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의뢰 및 연계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자격구분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input type="checkbox"/> 생계 <input type="checkbox"/> 의료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기초연금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input type="checkbox"/>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input type="checkbox"/> 전기요금	<input type="checkbox"/> TV수신료 면제	<input type="checkbox"/> 휴대전화요금
		<input type="checkbox"/> 지역난방요금	<input type="checkbox"/> 도시가스요금	<input type="checkbox"/>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_\_\_\_\_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_\_\_\_\_ · 이동통신사  KT  SK 텔레콤  LG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_\_\_\_\_ 사업자명 : \_\_\_\_\_ 고객번호 : \_\_\_\_\_)
- 시내·외유선전화 (계약자주민등록번호 : \_\_\_\_\_ 전화번호 : \_\_\_\_\_ 사업자 :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가족 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SK 텔레콤 <input type="checkbox"/> LG 유플러스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SK 텔레콤 <input type="checkbox"/> LG 유플러스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SK 텔레콤 <input type="checkbox"/>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과 초중고 교육비지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확 인**

( 체크)

(4쪽 중 3쪽)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동 의 (√ 체크)
<p><b>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b></p> <p><input type="checkbox"/> 제공받는 자: <u>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u></p> <p><input type="checkbox"/>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u>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u></p> <p><input type="checkbox"/>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u>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u></p> <p><input type="checkbox"/>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u>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u></p> <p><input type="checkbox"/>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p> <p>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p>	[ ]

선택적 동의	동 의 (√ 체크)
(아래 선택적 동의 항목은 각각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항목 미동의시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3.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신청한 것에 동의합니다.	[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6.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금융·신용·보험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에 한함)	[ ]
7.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만2세 연령 도래시 양육수당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8.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의뢰 및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 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유의 사항	확 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7. 맞춤형 급여 안내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내해 드리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거부 의사가 없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가구 단위로 신청되며, 가구원은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해 안내된 사회보장급여는 정보통신망에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안내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 구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안내 및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에너지바우처 담당부서(산업부서 등)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sup>12)</sup>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9)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10)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2)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안 내 사 항**

<b>신 청 기 간</b>	-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인 경우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신청하여야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b>처 리 기 한</b>	- 14일 : 유아학비, 양육수당(연장시 30일)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부모급여(연장시 60일),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b>관 계 법 률</b>	<b>보장구분</b>	<b>해당 법률</b>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청소년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b>신청시 구비서식</b>		<b>추가 제출서류</b>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 <sup>13)</sup>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통장 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자산형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자산형성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권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노인, 아동·청소년, 기타(차상위분인부담 경감, 자산형성)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b>제출하는 곳</b>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3)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7.1.>

## 소득·재산 신고서 [ 신규 변경 ]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 <sup>1)</sup>								
소득 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원	원	원	원	원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원	원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 <sup>2)</sup>		원	원	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	원	원	원	
재 산 사 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원	토 지	원	원	원	
	선 박	원	원	입목재산	원	원	원	
	항공기	원	원	어업권	원	원	원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명( ) <input type="checkbox"/>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원
	임차보증금	<input type="checkbox"/> 전·월세보증금( 원) <input type="checkbox"/> 상가보증금 (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						원
	금융재산							원
	동 산	<input type="checkbox"/> 소 ( 마리, 원)	원	원	분양권	원	원	원
		<input type="checkbox"/> 돼지( 마리, 원)	원	원	조합원 입주권	원	원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가축( 마리, 원)	원	원	회원권	원	원	원
		<input type="checkbox"/> 종묘( 원)	원	원	회원권	원	원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input type="checkbox"/> 기계·기구류( 원)	원	원	회원권	원	원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원	원	회원권	원	원	원	
	소계 (A-(B+C+D))						원	
	(A) 일정기간 <sup>3)</sup>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부 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원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input type="checkbox"/>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 <sup>4)</sup>	<input type="checkbox"/>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원) <input type="checkbox"/>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b>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b>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2021년 7월 1일 이후(다만,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은 조  
 사일로부터 5년)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2.9.5>

(앞쪽)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sup>1),2)</sup>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 <sup>3)</sup>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 지원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맞춤형 급여 안내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위한 수급가능성 확인,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_\_\_\_\_년 \_\_\_\_\_월 \_\_\_\_\_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4조,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이후 주기적인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재산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가구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하는 사업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 및 제4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주거급여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1

## 생활비용보조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b>■ 일반 사항</b>	
가구원 범위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세대
소득인정액	월 소득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b>■ 소득 평가</b>	
①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li> <li>○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그 밖의 사업소득</li> <li>○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li> <li>○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법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li> </ul>
<b>■ 재산의 소득환산</b>	
② 승용차 재산	2500cc이상 : 자동차 가액×환산율(100%×1/3)
일반재산	③토지 : 공시지가÷지역별 적용율×환산율(4.17%×1/3) ④주택·건축물: 공시가격(국토교통부 제공)÷시가 보정율 0.9 ×환산율(4.17%×1/3) ⑤전·월세 보증금×환산율(4.17%×1/3) ⑥2500cc미만 : 자동차 가액 환산율(4.17%×1/3) ※ 차령6년초과차량·승합차·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평가
⑦ 금융재산	금융재산 총액 ×환산율(6.26%×1/3)
<b>■ 공제</b>	
⑧ 기초공제	대도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⑨ 대출금	금융권 대출 전액
<b>■ 소득인정액 계산식</b>	
$\text{①}+\text{②}+(\text{③}+\text{④}+\text{⑤}+\text{⑥}+\text{⑦})-\text{⑧}-\text{⑨}$ ※ ③~⑦ 재산별 가액 합산후 ⑧,⑨를 순차적으로 공제후 환산율 적용 공제 순서는 일반재산→금융재산 순으로 이루어짐, 공제금액>재산가액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	

※ 소득은 전년도 소득전체를 월 평균으로, 환산 대상 재산(금융·부동산 등)의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공공기관 공시재산은 공시일)

※ 재산별 세부사항은 초중고교육비지원 산정기준 준용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649호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5월 7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 항목을 현행 행정환경 및 업무처리 실태에 맞게 개선하여 행정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세부업무별 행정정보 공표방법의 현행화 및 담당부서 항목 신설(안별표)
  - ‘각종 이의신청 심의결과’ 삭제, ‘부서별 과장급 이상의 업무 추진비 집행내역’ 및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등 행정정보 추가

### 3.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 규칙」 제3조의2 (행정정보의 공표)

#### 4. 개정규칙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출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총무과

2) 전화번호 : 052)241-7205, 팩스번호 : 052)241-7209

3) 전자우편(E-mail) : jieun77@korea.kr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http://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규칙명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규칙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정보공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세부업무별 행정정보 공표방법(제3조의2 관련)

[별표]

세부업무별 행정정보 공표방법(제3조의2 관련)

구 분		공 표 방 법		
행정정보	세부업무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	업무계획	연 1 회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예 산	연 1 회	의회의결일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결 산	연 1 회	결산승인일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기 금	연 1 회	의회의결일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2. 부채현황과 상환계획	부채현황	연 1 회	결산종료일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상환계획	연 1 회	결산종료일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3.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인구 및 세대	월 1 회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산 업	수 시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도시계획	수 시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4.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평가결과	연 2 회	8월, 익년2월	정보통신망
5. 중장기 종합계획 및 수정계획	중장기종합계획	연 1 회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수정계획	수 시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6. 소속 사업소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평가결과	연 1 회	익년1월	정보통신망

구 분		공 표 방 법			
행정정보	세부업무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담당부서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	업무계획	연 1 회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기획예산실
	예 산	연 1 회	의회의결일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결 산	연 1 회	결산승인일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기 금	연 1 회	의회의결일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2. 부채현황과 상환계획	부채현황	연 1 회	결산종료일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기획예산실
	상환계획	연 1 회	결산종료일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3.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통계연보	연 1 회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기획예산실
4.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평가결과	연 2 회	8월, 익년2월	정보통신망	기획예산실
5.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연 1 회	익년 1월	정보통신망	기획예산실
6.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평가결과	연 1 회	익년 1월	정보통신망	기획예산실

구 분		공 표 방 법		
행정정보	세부업무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7.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	수 시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공보게재 또는 정보통신망
8. 교량 및 재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	수 시	최종결재완료후 1월이내	정보통신망
	관 리 계 획	수 시	최종결재완료후 1월이내	정보통신망
9. 공사 및 용역 사업 추진 사항	1억원이상 공사	수 시	공사착공후 1주이내	정보통신망
	5천만이상 용역	수 시	용역착공후 1주이내	정보통신망
	설계변경 사유, 증감된 공사비	수 시	최종결재완료후 1주이내	정보통신망
10. 행정심판 재결결과	행정심판 재결결과	수 시	종결후 1월이내	정보통신망
11. 각종 이의신청 심의결과	지방세이의 신청	수 시	종결후 1주이내	정보통신망
	지방세심사 청구	수 시	종결후 1월이내	정보통신망
	정보공개이의신청	수 시	종결후 1주이내	정보통신망
12. 공청회 결과	공청회 결과보고서	수 시	공청회 개최완료후 1월이내	정보통신망

구 분		공 표 방 법			
행정정보	세부업무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담당부서
7. 구에서 결정 징수하는 수수료의 조정 결과	수수료 등의 조정 결과	수 시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공보게재 또는 정보통신망	세무2과
8. 교량 및 재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	수 시	최종결재완료후 1월이내	정보통신망	안전총괄과 건설과
9. 공사 용역 물품 계약 현황	계약	수 시	계약체결 이후	정보통신망	회계과
10. 행정심판 재결결과	행정심판 재결결과	수 시	종결후 1월이내	정보통신망	기획예산실
11. 부서별 과장급 이상의 업무 추진비 집행내역	업무추진비	월 1 회	월초	정보통신망	해당부서
12.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수질검사	분 기	분기	정보통신망	환경위생과
13. 공청회 결과	공청회 결과보고서	수 시	공청회 개최완료후 1월이내	정보통신망	해당부서

## 관계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및 같은 영 제124조에 따른 계약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국가기관 및 같은 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일정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652호

# 공유재산 내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원상회복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고자 했으나 행위(점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7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 공유재산 내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2.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제8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기간 : 2026. 5. 7. ~ 2026. 5. 22.(14일 이상)
4. 공시송달 내역

연번	소재지	지목	현황 면적(m <sup>2</sup> )	점유(추정) 면적(m <sup>2</sup> )	행위(점유)자		위반 사항	처분내용
					성명	주소		
1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산 152-1	도로	3,380	280	미상	미상	무단점유 (경작)	원상복구 명령 (점유물 철거 또는 이전조치)
2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892-44	답	857	30	미상	미상	무단점유 (창고)	
3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1029-4	대	1,781	513	미상	미상	무단점유 (경작500,창고13)	
4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1029-5	대	411.7	50	미상	미상	무단점유 (경작)	
5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1029-6	대	491.1	80	미상	미상	무단점유 (경작)	
6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1029-8	대	435.6	5	미상	미상	무단점유 (경작)	
7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1029-9	대	346.7	75	미상	미상	무단점유 (경작)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게시판
6.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회계과(☎052-241-7312)

###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 및 현장사진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 (당사동 산152-1)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현장사진



###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 및 현장사진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 (달천동 892-44)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현장사진



###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 및 현장사진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 (산하동 1029-4)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현장사진



###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 및 현장사진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 (산하동 10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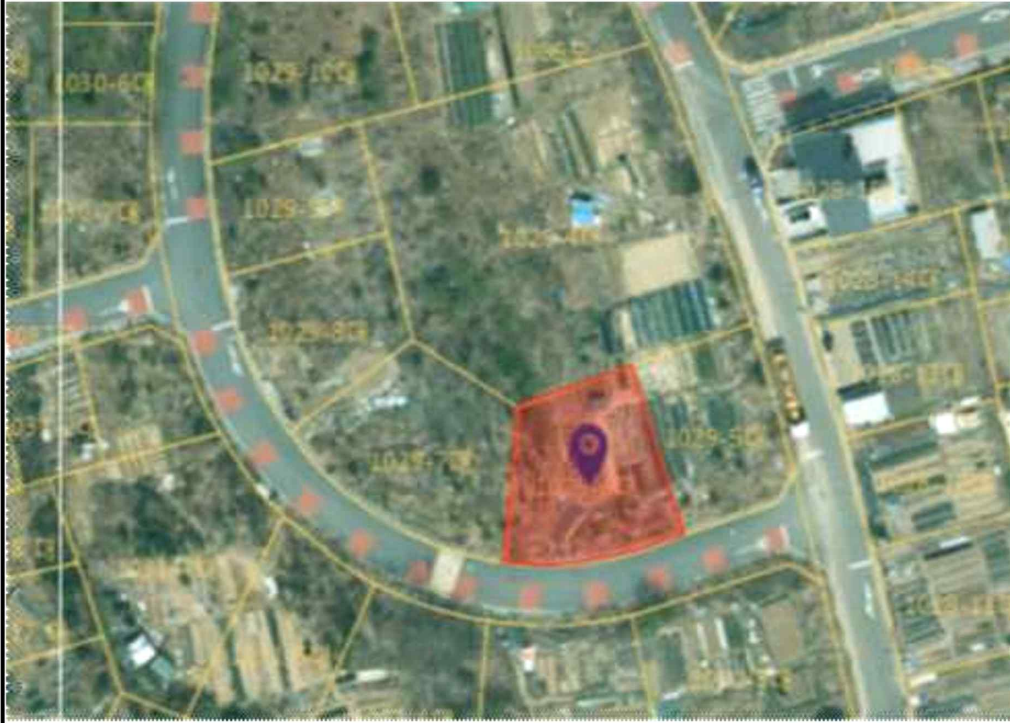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현장사진



###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 및 현장사진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산하동 1029-6)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현장사진



###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 및 현장사진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산하동 1029-8, 1029-9)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현장사진

